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2024. 9. 2.~2025. 4.30.)

고 양 시 의 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목 차

□1 **조사 개요** 3

□2 **조사 실시 경과** 5

1. 조사 일정 5

2. 서류 제출 7

3. 현장 확인 11

4. 증인 출석 12

□3 **주요 조사실시 내용** 13

□4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13

1. 총괄 사항 13

2.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13

□5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처리** 29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 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 과 보 고 서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이미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 신청사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장이 의회나 집행부 부서와의 협의 없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용도로 건축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청사 계획이 중복되어 추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고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조사하고,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이 반려됐음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없이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며

○ 고양시청사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과 예산 지출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임

2. 조사기간 : 2024. 9. 2. ~ 2025. 4. 30.

- 1차 연장 : ‘25. 3. 31. / 3개월 연장
- 2차 연장 : ‘25. 4. 30. / 1개월 연장

3. 조사범위 : 요진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 이전 정책결정 등 관련 업무 전반

4. 조사방법 : 서류 조사, 현지 확인 등

5. 조사위원회

가. 조사위원회 : 특별위원회 구성

나. 조사 위원 : 9명

- **위원장(임홍열), 위원(권용재, 정민경, 문재호, 김학영, 김해련, 최규진, 권선영, 조현숙)**

6. 조사 대상 기관 등

○ **고양시** ※ 현장확인, 증인·참고인 신문 및 질의 병행 실시

7. 조사 중점 사항

○ 23년 1월 4일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정책 결정 관련 내용

○ 백석동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 시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내용

○ 행정안전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비비 집행

○ 23년 1월 4일 이후 시청 홈페이지 시청사 이전 게시물 게재 경위

8. 조사(사무) 보조 : 9명

○ 조사총괄 : 전문위원 지방시설주사 송석민

○ 조사일반 : 지방행정서기보 김하나, 지방행정서기보 권용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승현

○ 지방속기주사보 손인선 (속기)

○ 지방전산주사보 김재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강현승 (방송)

○ 지방운전주사 김윤수 (운전)

2 조사 실시 경과

1.조사일정

일 시	차 수	감 사 내 용	출석대상	장 소
'24. 9. 2.(월)		□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결	-	본회의장
'24. 9. 6.(금)		□ 특별위원회 구성안 의결		본회의장
'24.11.25.(금)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		본회의장
'24.11.25.(금)	위원회 1차	1. 위원장 선출의 건 2.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4.12.10.(화)		□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	본회의장
'24.12.19.(목)	위원회 2차	1. 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의결	-	위원회 회의실
'24.12.20.(금)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본회의장
'24.12.30.(월)	위원회 3차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3. 세부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5. 1.20.(월)	위원회 4차	1. 업무보고의 건 2. 세부일정 협의의 건 3.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 회의실
'25. 2.10.(월)	사무조사 1일차	□ 신청사 정책결정 과정 등 전반적 사항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5. 2.11.(화)	사무조사 2일차	□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 건물 준공.재산이관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5. 2.20.(목)	위원회 5차	1.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	위원회 회의실

일 시	차 수	감 사 내 용	출석대상	장 소
'25. 2.27.(목)	위원회 6차	1.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5. 3. 5.(수)	사무조사 3일차	□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 용역사 선정 □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증 인 참고인	위원회 회의실
'25. 3. 6.(목)	사무조사 4일차	□ 신청사 이전 홍보 관련 □ 백석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 백석공공업무시설 소송(학교용지 부담금 등)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5. 3. 6.(목)	위원회 7차	1.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	위원회 회의실
'25. 3. 7.(금)	사무조사 5일차	□ 타당성조사 예비비 지출 □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실효 등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5. 3. 7.(금)	위원회 8차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2. 공익감사청구 동의의 건		위원회 회의실
'25. 3.14.(금)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결		본회의장
'25. 4. 8.(화)	위원회 9차	1.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 회의실
'25. 4.21.(월)	위원회 10차	1.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추가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 회의실
'25. 4.25.(금)	사무조사 6일차	□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기존 신청사(원당) 추진 관련	증 인	위원회 회의실
'25. 4.25.(금)	위원회 11차	1.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 공익감사청구 동의의 건 3.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동의의 건		위원회 회의실

2. 서류제출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1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에 관한 사항	부서 이전 관련 부서(재산관리과) 보고 내용 일체(1차, 2차 포함) 및 향후 계획
2		재산관리과 부서 이전 관련 법률 검토 내용
3		부서 이전 관련 예산지출 항목 및 집행관련 상세 내용
4		시청 부서별 외부 청사 임대 만료 현황 및 연장 관련 부서 입장
5		2023년 1월 4일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관련 부서 논의 사항 일체
6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사건립단의 법률자문의뢰서 및 법률자문 내용 일체
7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관련 경기도 및 행안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포함) 공문 수발신 및 부속문서 일체
8		1, 2, 3차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서 및 관련 자료 일체
9		1, 2, 3차 투자심사 관련 경기도 공문 및 부속 문서 일체
10		1, 2, 3차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및 공문서 일체
11		1, 2, 3차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관련 부서 보고 내용
12		백석동업무빌딩 시청사 리모델링 관련 각종 적용 법률 검토 내용 및 공공청사 필수 인증 내용 일체
13		백석동 업무빌딩 소유권 이전 추진경위 및 재산관리과 이관 시기
14		백석동 업무빌딩 이관 관련, 재산관리과와 도시개발과 간 공문 수발신 및 부속문서 일체
15		2023. 1. 4. 시청사 이전 행정 관련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내용 및 답변
16		2023. 2. 8. 실무부서 TF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 프로필, 회의내용 일체
17		2023. 3. 14. 시청사 이전 전문가 자문단 프로필, 회의내용 일체
18		도시계획정책관 협조사항 세부내용 및 검토 자료 일체
19		간부회의 중 ‘시청사 이전’ 관련 보고 자료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20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단 시청사 이전 관련 고양연구원 용역 의뢰서 및 용역 결과서
21		도시개발과 요진업무빌딩 활용 방안 연구 경위 및 용역비 지출 내용 고양연구원과 수발신 공문서 내용 및 부속 문서 일체
22		2022년도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 고양연구원 (구 시정연구원) 의뢰 관련 과업지시서 등 일체
23		고양시정연구원 「백석 Y-CITY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진행사항 제출 자료
2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관련 사업설명서
25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관련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 규모 및 계획
26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계약 현황
27	백석 업무빌딩 소송에 관한 사항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1심, 2심 판결문 및 부서 보고 내용 일체
28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 진행 중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에 포함한 내용에 대한 변론자료
29		요진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준비서면
30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고 항소심으로 종결한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31		요진 업무빌딩 건물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수임료
32	타당성 조사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행안부 타당성 조사 관련 예비비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 내용
33		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관련 예비비 지출 경위
34		2023년 예산담당관 기관공통경비 지출 계획서 및 2023년 일자별 지출 현황 및 목별 지출 현황
35		2023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 관련 예비비 지출 예산담당관 법률자문 내용
36		행안부 타당성 조사 관련 예비비 지출 부서 보고 내용 일체
37		행안부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e-호조 입력 내용 및 예산 출처 관련 내용 일체
38		2023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결재 문서 일체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39	타당성 조사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행안부 요청 자료 및 고양시 제공 자료 일체(공문서 포함)
40		2023. 4. 20. 타당성조사 추진 결정 언론관계자 현장방문 내용 일체
41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관련 타지자체 예비비 지출 및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등 사례
42	신청사 이전 보도자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22년 6월 1일 ~ 22년 12월 31일 신청사건립단 및 언론홍보담당관 신청사 관련 보도자료
43		2023년 1월 4일 이후 고양시 홈페이지 시청사 이전 관련 게시물 일체 및 게시 기간
44		2023년 1월 ~ 현재 신청사 건립단 및 언론홍보담당관 신청사 건립 및 시청사 이전 관련 보도자료
45		포털 내 백석업무빌딩 ‘고양시 신청사’ 명칭 사용 여부
46		고양소식지 게재된 ‘원당재창조프로젝트’ 및 ‘시청사 이전 계획’ 관련자료
47		시청사 백석동 이전계획 관련 보도자료 작성자 및 근거 자료
48		시청사 이전사업 현수막 소요예산 및 제작업체 자료
49	기존신청사 (원당) 관한 사항	고양시 신청사(주교동 206-1번지 일원) 추진 진행사항 일체 -경과 과정 및 예산지출 현황, 관련 용역 진행사항-
50		고양시 신청사 예정 부지(주교동 206-1번지 일원)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서 일체
51		신청사 건립 감리 업체 선정 과정 및 결과 -업체 수 · 발신 공문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52		민선8기 고양시 신청사 추진 검토 사항 일체 (인수위 논의 사항, 신청사 TF 회의 요약본 등)
53		신청사 추진 자문위원회 원구성 명단, 변경된 명단 일체
54		신청사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촉 가능성 검토 결과보고서
55		신청사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 중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논의 자료
56		시청사 이전 주민설명회 회의 일시 및 참석자 명단
57		인수위 및 신청사건립단 민간 자문위원 명단, 프로필

연번	요 목	제 출 내 용
58	기존신청사 (원당) 관한 사항	신청사 부지 GB해제 관련 경기도 및 국토부 협의사항 일체
59		신청사 부지 GB해제 관련 검토 자료
60		신청사 건립 관련 나우동인 및 헤닝라르센 관련 문서 수·발신 내용과 공문서에 수반된 부속 문서 일체, 용역 계약서 일체
61		용역 일시정지 관련 고양시와 나우동인 간 수발신 공문 일체
62		신청사 건립 관련 헤닝라르센 건축사무소와의 국제소송 가능성 검토자료
63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계약 유지, 재계약, 디자인 변경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추가 자료
64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진행상황
65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용역(4개) 중지 공문
66		타 지자체 공공건설공사 관련 조달청 시공자선정 유찰 사례
67		2022년 6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사건립단 법률자문의뢰서 및 법률자문 내용 일체
68		행정재산 해소 후 주교동 청사 계획 수립 관련 검토사항
69		공사비 상승 검토 사례(주교동 건립사업 사업비 상승)
70		주교동 건립사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사후관리 공문 및 부속문서
71	시청사 면적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행안부 청사 면적 관련 규정 및 22년, 23년, 24년 행안부 보고 내용 및 청사 면적 위반 관련 부서 대처 방안
72		고양시청사 면적 현황 자료
73	관련 기타 사항	신청사건립단 담당 업무 및 검토내용 자료
74		성사혁신지구 임대차 진행상황(공실률, 임대율)
75		제5차 행정사무조사 증인 中 고양시장 불출석 사유 및 세부일정
76		지방공무원 감사 시효 및 책임 범위 관련 자료

3. 현장 확인

○ **일 시 :** 2025. 3. 4.(화) 10:00~13:00

○ **장 소 : 백석동 업무빌딩**

○ **참 여 :** 14명(조사위원 7, 공무원 7)

◆**조사위원** : 임홍열(위원장)·정민경·문재호·김학영·최규진·권선영·조현숙 의원

◆**공 무 원** :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박광호 청사관리팀장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송석민, (주무관)권용진·김하나·김승현, (운전)김윤수

○ **활동(확인·점검) 내용**

◆현장확인 취지 설명 (위원장)

◆백석동 업무빌딩 현장 보고(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현장확인 사항

– 백석동 업무빌딩 출입구 공사 관련

– 지하주차장 관리 실태 파악

– 백석동 업무빌딩 관리실 현황 점검

– 백석동 업무빌딩 사무실 이용 실태 파악

○ **확인(점검) 사진 자료**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 28명 출석

연 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합 계			28명	
공무원	〈증 인〉		25명	
1	감 사 관	감 사 관 직 무 대 리	이종경	출석
2		기 술 감 사 팀 장	박정수	출석
3	기 획 조 정 실	기 획 조 정 실 장	윤경진	출석
4		예 산 담 당 관	김보경	출석
5		예산담당관 예산팀장	김우현	출석
6	자 치 행 정 국	재 산 관 리 과 장	한철희	출석
7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장	이근영	출석
8	신청사건립단	신 청 사 건 립 단 장	김성호	출석
9	도시주택정책실	도 시 계 획 정 책 관	유제학	출석
10	자족도시실현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임태성	출석
11	교 통 국	도 로 정 책 과 장	채만식	출석
12	도 시 혁 신 국	도 시 혁 신 국 장	조용주	출석
13		도 시 정 비 과 장	유호권	출석
14		도 시 개 발 과 장	이성실	출석
15	농 업 기 술 센 터	농산유통과 학교급식지원팀장	임대청	출석
16	푸른도시사업소	푸 른 도 시 사 업 소 장	신영호	출석
17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장	손종락	출석
18	도로건설사업소	공 사 과 장	김진철	출석
19		차 량 등 록 과 장	한민수	출석
20	의 회 사 무 국	의 정 담 당 관	김학배	출석
21	일 산 동 구	고 봉 동 장	문영기	출석
22	일 산 서 구	환 경 녹 지 과 장	양현종	출석
23		안 전 건 설 과 장	전찬주	출석
24		前)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장	석선애	출석
25	고양국제꽃박람회	운 영 본 부 장	안희용	출석
민간인	〈참고인〉		3명	
26	고 양 연 구 원	연 구 원	이동현	출석
27	참 고 인	前) 고 양 시 의 원	윤용석	출석
28		고양시시청사이전주민소송단	박찬권	출석

3 주요 조사실시 내용

○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집행
○ 신청사(원당)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1. 조사 총괄

○ 이동환 고양시장이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의회와의 논의 및 시민분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2023년 1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약 2년 여의 시간 동안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도 중지되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함

2.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

1)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 재착수 및 사업 완료 요구

◆ **지적사항**

- 집행부에서는 원당의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 8월 감사 시 ①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지의 80% 이상을 변경한 것은 조례 위반이며, ②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이 부적정하고, ③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이 부적정 하다는 것임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지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입지선정으로 기본계획은 향후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타당성검토나 실시계획 수립 시 면적 및 입지의 조정 등 계획 변경이 가능함에도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진 징벌적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음

- 또한「도시개발법」등 타 법령에서는 구역(위치) 지정 후 변경이 될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서는 변경 시 심의를 받으라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본계획에 따른 개략적인 위치 선정을 위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과 관련하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 보고(2019.7.16. 시장 결재)>에서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등을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겠다 보고 한 것은「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제3항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임

- 따라서 민간단체의 대표를 비영리민간 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서(평화미래정책관-3935(2019.7.22.))는

대학교, 도시관리공사, 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에 민간단체 대표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는 시민대표가 민간단체 대표의 전부인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쓰고 4곳에만 공문을 보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결론을 낸 것은 부당함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단체 추천이 가능함에도 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이 마치 행정을 잘못한 것처럼 표현함
- 위와 같이 감사결과가 사실을 확대해석 및 왜곡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이 위원회 심사 결과를 부정할 정도의 문제가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를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며, 원당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 현재 중지된 건축설계를 신속하게 재착수하지 않으면 GB는 자동 실효(실효시점 : 2026. 5. 13.)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매몰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들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처리 요구사항

- 감사결과(2023. 8)를 근거로 원당 신청사 추진이 중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 감사결과는 향후 매몰비용 발생 등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될 수가 있음. 이에 감사결과(2024. 8.)가 타당한지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하며, 건축설계를 재착수 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신속히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람

2)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수립 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시행 검토

◆ 지적사항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하고자 부서 이전 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올린 것은 현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
- 2025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일반투자, 행사성, 홍보관, 청사 신축, 문화제육시설 신축 등 총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 이중 청사 신축사업(증축·취득사업을 포함[1])은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청사 신축사업으로 봐야하기에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이면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고 20억원 이상 60억 미만일 경우 시에서 심사를 해야하나 하지 않음
- 집행부에서는 부서 재배치 비용은 공사비가 아니기에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매뉴얼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보면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이 있는데 제1회 추경경정 예산요청 시 사업내용에 백석별관 실구획 등 환경개선공사비(시설비)로 명기했기에 총사업비(공사비, 운영설비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백석동 업무빌딩 전체 면적 중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빌딩은 청사로 봐야 하기에 부서 이전 예산 요청 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한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

1)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 -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 포함)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 (2025년 매뉴얼 19p)

◆ **처리 요구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회는 조례나 예산 등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기에 예산 수립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기 바람
-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부서 이전 시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라 청사 사용면적과 투입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신축・증축・취득)으로 추진해야 함

3) 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 문제

◆ **지적사항**

- 고양시와 요진과의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를 해줄 수 있기에 협약도 부지 또는 시설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심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비용)을 공공기여로 보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에 설치되는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기여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과 관련이 없는 타 법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공공기여에 포함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음
- 다시 말해, 공공기여는 협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해야 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는 「국토

계획법」의 범위 안에서 요구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므로 타법에 따른 부담금을 허용하는 것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났기에 대법원에서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항임

- 따라서 공법 분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개인이 상고 관련 권위자라 생각하는 변호사 몇 명의 말만 듣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법리해석이 있어야 했기에 담당자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상고를 제기했어야 함

◆ 처리 요구사항

- 소송 조기 종결 등 중요사항 판단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소송 조기 종결을 판단하는 과정 상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시행 요구

(참고 1) 항소심 판결보고 3. 검토의견 <도시균형개발과-5791(2022.11.02.)>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 항소심 법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파생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상고심에서도 市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상고 여부 관련

- 상고시 약 3억원[6]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서울고법 재심리까지 1년 이상[7] 소요되어 업무빌딩은 준공(2023. 3.) 이후 8개월 이상 방치될 것으로 판단됨
- 파기환송 확률·소요비용 등 고려시 상고포기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 및 활용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변호사 의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역임)

- 파기환송 확률은 5% 미만으로 상고 실익은 없다는 의견

※ 대법원의 매년 심리건수는 4만여건(1인당 280여건/월)으로 사실상 권리구제기능은 포기하고 법령 해석·적용 통일기능(판례로 남길만한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 등)에 중점을 두고있는 상황

4)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성

◆ 지적사항

- 2020년에 신청사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시설비로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산담당관에서는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기관공통경비)로 지급하려 함
- 예산담당관에서는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려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상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소규모 용역이라 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의 용역으로 봐야 하고
-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과거의 예산편성목을 참고하여야 하기에 2020년과 2021년 신청사 관련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비롯한 설계 용역 등은 모두 시설비로 지급되었기에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했어야함
- 그러나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려 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예산 과목(시설비)에 맞게 집행하라 지적됨
- 이후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감사 지적에 따라 시설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시설비 예산이 없다 보니 예비비를 시설비로 전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①「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든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추경을 요청할 수 있고,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경기도 감사 지적 사유로 용역의 일시정지 후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의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부당함

◆ 처리 요구사항

- 예산담당관에서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라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필요

(참고 2) 2020년도 신청사 관련 예산 지출 현황

회계구분	부서명	경비구분	사업명	통계목	적요	품의정보		
						품의번호	품의금액	발의일자
일반회계	평화미래정책관	일반지출	평화기반조성 추진	시설비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에어컨 실외기 이전 설치 공사 계약 건의	28	6,000,000	2020-01-31
일반회계	평화미래정책관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추진	시설비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건의	96	120,000,000	2020-02-25
일반회계	평화미래정책관	일반지출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	시설비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 기획 및 기본설계용역 계약 건의	36	21,800,000	2020-03-12
일반회계	평화미래정책관	일반지출	김대중 전대통령 사저 매입 및 보존	시설비	김대중 대통령 사저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	108	21,000,000	2020-06-01
일반회계	평화미래정책관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추진	시설비	신청사 타당성 조사 수수료 납부	133	75,000,000	2020-11-05

(참고 3) 2021년도 신청사 관련 예산 지출 현황

회계구분	부서명	경비구분	사업명	통계목	적요	품의정보		
						품의번호	품의금액	발의일자
일반회계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추진	시설비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건의	12	52,594,500	2021-06-11
신청사건립기금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시행건의	1	400,000,000	2021-01-29
신청사건립기금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시행건의	1		2021-01-29
신청사건립기금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고양시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시행 건의	3	227,082,960	2021-02-22
신청사건립기금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시행건의	2	93,398,000	2021-03-12
신청사건립기금	신청사건립단	일반지출	신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고양시 신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공모안 작성 보상비 지급 건의	6	200,000,000	2021-12-21

5)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배임 가능 문제

◆ 지적사항

- 채권 보전을 위해 요진 소유 부동산에 취해진 가압류를 해제해 209억원 이상의 유동자금을 마련해 준 것은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요진에서는 현금 융통을 해야 했고, 고양시는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채권 확보 면에서 더 유익한 행정으로 보고 가압류(채권)를 해제하고 근저당(물권)을 설정한 것인데,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기업이 파산한다거나 기업 가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 차원의 명확한 자료 조사와 충분한 데이터 분석 없이 결론을 내 시와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요진의 요구와 제시 내용만을 보고 현금 융통을 위해 가압류를 풀어준 것은 행정사무조사 과정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임
- 또한 실질적인, 채권 확보 면에서 더 유익한 행정이라 한다면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야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권 가치(금액)를 주장하여 채권 확보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기에 공무원은 항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시 필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 태만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가압류 해제 후 요진소유의 상가건물(충남 아산 소재)에 근저당 설정 시 근저당 물건의 값어치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처리 요구사항**

- 요진의 현금 융통을 위해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은 배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감사 시행 요구

6) 백석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 방향 지시 문제

◆ **지적사항**

- 시장은 '고양시청사 백석이전' 결정은 이전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계획수립 단계이며,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1월 시장의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서에서는 정책 결정에 따라 청사로 활용 예정이라는 전제를 하고 고양연구원에 추가 제안 검토를 요청함
- 정책결정은 공무원들에게는 구속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가지고 고양연구원에 정책결정 사항이라는 문구로 연구과제에 추가 반영토록 한 것은 고양연구원의 연구활동의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임

◆ **처리 요구사항**

- 정책결정이라 함은 시장 한 명의 결정이 아닌 시민, 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정책결정이라 공문에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에 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 바람
- 또한 상급자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가 어떠한 효력과 구속력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는 이러한 지시에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참고 4) 연구과제 추가 제안 요청 공문 <도시균형개발과-425(2023.01.18.)>

고 양 시

수신 재단법인고양시정연구원장
(경유)
제목 연구과제 진행사항 관련 추가 제안 검토 요청

1. (재)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156(2023. 1.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제안 연구과제 대상인 백석동 1237-2번지 상 업무시설은 **『2023. 1. 4. 시 정책결정(언론보도)』으로 '청사'로 활용 예정인 바,**

3. **위 정책결정 사항을 현재 연구과제에 추가 반영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보도 자료. 끝.

(참고 5) 주민 소송 시 피고(고양시장)의 반박

(5)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23. 1. 4. 시민과 시의회, 행정부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결정'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3. 1. 4. 발표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향후 고양시청사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발표로 인하여 고양시청사의 소재지가 백석동으로 변경되는 법적 효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을 발표한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절차는 '이전계획수립 → 조례개정 → 공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바, 피고의 2023. 1. 4.자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발표는 '이전계획수립'의 단계에 해당할 뿐입니다.

7)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 상 문제

◆ 지적사항

- 민선7기 시장 임기 말(22년 6월)에 신청사 건립 사업관리용역사(감리용역)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당시 시장 당선인이 사업관리용역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시 제2부시장이 개찰을 연기하기로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음
- 최종적으로는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개찰했지만 권한이 없는 시장 당선인 때문에 개찰을 연기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처리 요구사항

-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찰 시행에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이에 따라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시행 요구

(참고 6) 개찰 실시계획 보고 공문 <회계과-25278(2022.06.17.)>

고양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양시 신청사건립 사업관리용역 개찰 실시계획 보고

개찰 연기중인 고양시 신청사건립 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그간 진행사항
○ 2022. 5. 30. : 용역 TP(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신청사건립단)
○ 2022. 5. 31. : PQ 및 TP 평가결과 회계과 접수
○ 2022. 6. 3. : 용역 가격입찰 공고(2022. 6. 9. 개찰예정)
○ 2022. 6. 8. : 개찰 일시 연기 결정(제2부시장실)
–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지사항에 개찰 연기 공지
– 사업참여업체 5개사에 개찰 연기 구두 통보(5개사 모두 동의)
○ 2022. 6. 16.
– 시장 당선인에게 개찰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개찰 여부 결정 권한 없음. 현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안임
– 시장 당선인 의견 보고 (제2부시장), 현 시점 계약절차 준수 이행

8) 신청사 이전 홍보 관련 잘못된 정보 전달

◆ 지적사항

- 신청사 이전 정책 결정(2023.1.4.) 시 시장의 발표는 외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결정에 의한 내부 행정계획의 발표라고 봐야 함
- 그러나 시 홈페이지는 내부 및 외부적으로 확정된 공식적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를 믿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킴
-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은 기획정책관에서 온 기사를 참고해서 설명문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기획정책관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기사 중 신년기자간담회는 명확히 작성자가 존재하지만, 당시 제2부시장 발표 내용에 관한 기사는 작성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현재 진술이 불일치 하는 상황임

◆ 처리 사항

- 당시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증인의 진술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에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발의

(참고 7)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문(23.1.5.~1.30.)

고양시 신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문

2023년 1월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시청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1983년 고양군 시절에 건립된 청사를 사용해 왔습니다. 낡고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여러 부서가 인근 10개 건물에 분산되어,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250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도 시 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TF를 구성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부채납이 확정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만여평의 넓은 공간,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으로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성장 재원 마련도 백석동 이전의 주요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로 악화되는 우리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과 미래 산업에 투자할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백석동 이전으로 예산 2,9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1,700여억원의 기금은 자족도시 고양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당지역의 공동화 문제도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원당 역세권 재구조화와 현 청사부지 인근을 복합 개발하는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시정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의 미래가치를 보다 높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청사 조성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 양 특 례 시

9) 백석동 업무시설 이전 시 예산절감에 대한 명확한 검증 필요

◆ 지적사항

- 고양시장은 백석동 업무시설로의 청사 이전의 중요 이유 중 하나로 신청사 건립비용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에 백석동 업무시설로의 청사 이전으로 약 2,900억원 이상의 원당 신청사 건립비용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성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경의선, 교외선 철도가 도시를 관통하여 공간이 분리되는 등 일산지역과 덕양지역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균형발전이 필요하기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일산권역과 덕양권역의 도심활력 제고 등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간 구상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원당은 균형개발을 위하여 8지역[2]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청이 위치하고 있어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 식사지구~고양시청~대곡역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이 있는 등 도시계획상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백석으로 시청을 이전하면 철도계획은 전면 재검토 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비용 부담의 증가를 감안해야 하는데 단순히 건물 하나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유로 도시 전체의 균형 개발과 철도 등의 기반시설 개발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임
- 또한 현재 원당 신청사 예정지는 자연녹지(그린벨트)로 토지보상비가 약 42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청사개발 시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최소 3배 이상의 지가 상승으로 고양시 자산의 상승이 있고, 민선7기에서 원당 지역의 균형

2) 대화, 장항, 풍동, 원당, 관산, 고양, 덕은, 탄현

발전을 위해 신청사 건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 2,28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 투입될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적립된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의 세입·세출 개념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이미,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약 68억원이 소요되었고, 백석업무빌딩 리모델링에 6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는 시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검증이 필요함

◆ **처리 요구사항**

- 시민들을 위한 홍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데 단편적인 부분만을 예산절감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철도 등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제 예산 절감이 되는지 명확한 검증 후 검증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0) 부서 이전 시 소재지 변경 문제

◆ **지적사항**

- 백석동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서 이전 시『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법률 자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법률 자문은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회 법률 자문결과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처리 요구사항**

-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제 조건 등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 후 법률 검토(변호사 자문 등)를 시행하기 바람

11) 인터넷 공개된 청사 면적에 대한 문제

◆ **지적사항**

- 현재 인터넷에 공개된 청사 면적이 실제 이용하는 청사 면적과 일치하지 않음

◆ **처리 요구사항**

- 공개된 청사 면적을 실제 이용 면적에 맞춰 수정 하기 바람

※ 공익감사 진행 중 (고양시 청사 면적 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12) 신청사 추진 TF팀 구성 부적정

◆ **지적사항**

-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신청사 추진 TF팀 명단이 실제 회의록의 명단과 일치하지 않으며,「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았음

◆ **처리 요구사항**

- 부서에서는 향후 조사 자료 제출 시 자세히 검토하기 바라며, 비상설 위원회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 검토(변호사 자문 등)를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기 바람

5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처리

1. 지적사항 조치

○ 원당 신청사 건립 부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법적 절차에 맞춰 사업이 추진 된 곳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설계를 중지하여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안되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데 이는 공무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그린벨트 자동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

○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상적이 아닌 근본적인 조치 강구

※ 30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거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익감사 청구 등 별도로 조치할 계획임.

2. 지적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 보고

○ 시정 및 개선사항 완벽처리 : 허위보고 및 부실보고 지양

○ 조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관리 번호	조치 구분	제목 및 지적사항	처리 내용 (조치 사항)	완결 여부
지적 1				
. . .				
지적 12				